

사유에는 誤認混同할 수 있는 것과 모럴리티에 違背하는 것들이 있으며 상대적 사유에는 先登錄商標가 있다면 또는 公知의 상표가 있을 때등이 대상이 된다.

審查節次는 商標廳이 거절하지는 않으나 登錄異議申請의 절차는 있으며 이는 西獨法制와 비슷하다. 出願은 EC상표청에 直接提出할 수도 있고 加盟自國을 經由해도 된다. 파리협약が맹국들에게는 優先權을 主張할 수도 있다. 다만 西獨法에는 持株會社가 傍系會社의 상표를 所有할 수는 없으나 EC협약에는 이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財貨나 役務의 分類는 니이스協定의 분류를 사용하여 調査業務는 強制性을 賦與하게 되어 있으며 調査方法은 EC상표, 각국의 國내상표, 마드리드상표협정에 따른 상표가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강제조사결과는 出願人에게 意見을 불여 報告하되 출원인은 이 보고서에 따라 繫屬하거나 補正 또는 取下與否의 態度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조사한 후에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先行의 同一 또는 類似商標가 있다해서 거절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표청은 선행의 상표권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이의신청의 機會를 마련해 준다. 이의신청기한은 4個月이다. 또 선행 EC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本人이 자기상표를 實際로 5년 이상 사용했어야 한다.

이의신청된 事件은 調停部에 돌려서 兩當事者와 第3者가 合席하여 對話를 通해서 解決을 企圖한다. 그러나 조정하지 못할 때는 다시 審查部에返送하여 거기에서 거절한다.

EC상표는 상표청에 등록되는대로 公表되어 그때부터 보호된다. 상표의 사용은 등록후 5년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5년동안 EC域內에서 사용되지 않으면 失効하게 된다. 다만 一定條件 아래에서 回復도 인정된다.

EC상표는 동일 또는 유사상표의 등록일 하지 않았어도 既使用者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先使用者에게는 그 行爲에 권리가 미치지 못한다.

權利者가 市場에 流通시킨 商品을 제3자가 正當하게 轉賣해도 無妨하게 되어 있다. (C記)

世界工業所有權界의 概況

—77年中 WIPO의 活動目標—

지난해 國際工業所有權界에서 刮目할만한 움직임이 있었다면 그것은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協約의 修正作業의 繼續과 特許節次를 위한 微生物寄託에 관한 國際的 承認에 따른 부다페스트條約의 外交官會議에서의 採擇이라 하겠다. 이밖에 商標登錄目的을 위한 國際商品 및 시어비스分類에 관한 니이스協定의 재네바協約이 外交官會議에서 採擇된事實과 特許情報에 관한 WIPO常任委員會의 設立 및 PCT(特許協力條約)批准書의 寄託國數가 定足數에 達함으로써 同條約이 1978年 1月 24日에 發効하게 된 것도 重要한 움직임이었다.

모든 工業所有權活動의 主目的은 공업소유권의 相互保護問題에 있어 國家間의 協力增進이라 하겠다. 1977年中 WIPO의 활동은 國際條約의 現代化와 新規條約의 採擇, 그리고 國家및 國際水準에서의 既存保護에 관한情報의擴散에 主力한 것 등이다. (WIPO提供)

파리協約修正作業 順調

—79年上半期中 外交官會議召集—

國際工業所有權制度의 核心을 이루는 파리協約의 修正作業이 進行되는 동안 지난 1977年에 파리同盟執行委員會을 비롯하여 政府間準備委員會등 各級會議가 거듭 召集되었다. 執行委員會에서는 파리協約修正案에 대한 政府間準備委員會의 進展狀況에 따라 執行委員會次期正例會議以前에 外交官會議가 召集되어야 한다는前提 아래 WIPO事務總長은 執行委員會 特別會議를 소집하여 附議案件들을 處理토록 하였으며, 이 부의 안건들은 78年 9月에 소집되는 次期正例會議에서 議決되어야 한다. 어떻든 파리協約修正案을 最終決定하기 위한 外交官會議는 늦어도 79年上半期中에 소집되어야 한다.

파리協約修正에 관한 政府間準備委員會 2次會議와 3次會議는 작년 6월과 11월에 각각 소집되었었다. 上記 兩次會議에는 파리同盟 全加盟國과 WIPO, UN

및 UN専門機構代表들이 招請되었으며 2 차회의에는 66개국과 2 개 UN機構, 1 개 專門機構, 3 개 政府間機構 및 12개 非政府國際機構에서 代表와 읍지비를 각각 派遣하였다. 3次會議에는 62개국과 2 개 UN機構, 3 개 政府間機構 및 14개 非government國際機構에서 代表와 읍지비를 각각 派遣하였다.

政府間準備委員會以外에 開發途上國그룹(77그룹 및 그밖의 開發途上國), B그룹(先進國) 및 D그룹(社會主義國家)등이 非公式會合을 가졌으며 그동안 政府間準備委員會에 의해 1次會議에서 設置된 2個實務團이 파리協約 5條A項의 修正案과 發明者證에 관한 作業會議를 거듭하였다. (WIPO提供)

國際商品·서비스分類協定

—修正節次改正案 마련—

國際商品 및 서비스分類에 관한 니이스協定國數가 77年末 現在 31個國이 되었다. 이 중 5個國은 1957년 니이스協定을, 나머지 26個國은 1967年 스톡홀름協定을 適用받게 되었다.

오랜동안 同協定의 改正作業이 進行되어 왔으나 작년 5月에는 제네바에서 協定改正에 관한 外交官會議가 召集되어 WIPO國際事務局이 Ad Hoc専門委員會의 見解와 建議에 따라 作成한 修正案을 基礎로 討議한바 있다. 제네바協定下에서는 分類(그밖에 商品이나 서비스의 類의 變更 또는 クラス의 新設)의 修正을 在席ニイース協定國의 5분의 4 이상의 多數決로 確定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現行 니이스協定下에서는 協定國의 滿場一致로서 修正案을 通過시키기로 되어 있으며 그밖의 修正은 在席協定國의 單純過半數로서 可決토록 한데 反하여 現行協定은 協定國의 過半數의 賛成을 要求하고 있다. (WIPO提供)

國際商標出願·登録更新書式

—WIPO, TRT規程 따라 準備—

商標登録條約(TRT) 暫定諮詢委員會은 77年 1月 2

次會議를 갖고 TRT規程46條 1項 a에 의한 行政指示內容을 檢討한 후 WIPO國際事務局으로 하여금 商標의 國際出願 및 國際登録更新出願書式을 優先的으로 成案하도록 建議했다.

同諮詢委員會는 開發途上國의 商標制度에 대한 開發協力分野에 있어 WIPO의 過去 및 現在의 活動에 관한 國際事務局의 報告書를 檢討하고 이 분野에서의 開發協力を 積極支援할 方針을 굳히는 한편 WIPO로 하여금 會員과의 協調를 繼續 模索해 나가도록 勸誘하였다. (WIPO提供)

假稱 特許情報常任委 新設

—WIPO, 各關聯機構統廢合—

WIPO調整委員會와 파리同盟執行委員會는 지난 1月 17~20日 제네바에서 合同會議를 갖고 WIPO技術活動調整에 관한 Ad Hoc委員會의 建議案을 받아들여 WIPO特許情報常任委員會(가칭 PCPI)의 設立을 決定하는 한편 既存 政府間委員會, 分科委員會, 實務團 또는 類似機關들의 統合案을 承認하고 파리同盟總會를 비롯한 IPC同盟總會 및 PCT總會에 대하여 WIPO特許情報常任委員會 設立에 따른 決定事項들을 承認해 주도록 建議하였다.

特許情報常任委員會의 主目的은 特許情報에 관한 모든 問題에 있어 WIPO國際事務局은 물론 各國家間, 各同盟間의 緊密한 協調關係를 助長하는데 있다. 新設常任委員會는 파리同盟, PCT同盟, IPC間盟에 대하여 上記各同盟의 執行機關에 決定權이 賦與된 모든 特許情報資料에 관해 諮問을 하게되며 情報의 交換 및 協力分野를 開拓해 나가게 된다.

1979年末까지 파리同盟의 既存 政府間特許情報補完協力委員會와 IPC同盟의 執行委員會 및 實務班은 解體되고 WIPO特許情報常任委員會만이 存續하면서 實務班을 構成, 前者들의 任務를 繼承하게 된다.

WIPO調整委員會와 파리同盟調整委員會 1次會議에 參席한 國家 및 機關은 다음과 같다.

알제리, 오스트리아, 오스트렐리아, 브라질, 캐나다,